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95
----------	----

제출연월일:2004.4.21
제출자:차재천의원외 6인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04년 4월 28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 음

심 사 계 획

1. 활 동 목 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 사 안 건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 활 동 기 간

- 2004년 4월 28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이만재의원, 차재천의원, 고웅중의원, 이수현의원, 신교선의원, 심재국의원, 김영해의원

5. 운 영 계 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고
4.28(수)	제1차예결 (13:30)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4.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6.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